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란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 중 한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소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산업
2. 한우를 도축하는 산업
3.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중 한우에서 생산된 축산물(이하 “한우축산물”이라 한다)을 가공·포장·보관·수송·유통·판매·수출하는 산업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시·도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시·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별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별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도별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농가의 사육유형별 경영 현황
2. 기업의 한우산업 진출 등 시장 동향
3. 한우축산물의 소비·유통 현황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사육 및 가격 현황
2. 한우축산물 수출 현황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4.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6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통계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을 말한다.

제7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 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의 진흥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협의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협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한우수급조절협의회
2. 한우수출지원협의회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도축·출하 장려금 지급의 요건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란 20개월령 이상인 한우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한우 수급상황

2.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 지급 대상 및 범위, 장려금 지급 전담기관 및 장려금 지급 절차 등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우농가를 말한다.

1. 전년도 대비 한우 생산 또는 사육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소한 한우농가

2.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으면서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한우농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및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소규모 한우농가)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란 한우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한우농가를 말한다. 이 경우 한우 사육두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재된 한우를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수출기반 조성) 법 제2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수출에 필요한 판매·유통체계 등 구축
2. 한우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조사·연구
3. 한우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4. 한우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한우 생산업 참여제한 대상 기업)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회사를 말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 된 것으로 보는 회사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

제1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자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에 위탁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8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8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0제1항제1호 중 “한우·육우 소위원회”를 “육우 소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6항을 삭제한다.